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53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김대식 · 김선교 · 김기현
김태규 · 이주영 · 김상훈
윤한홍 · 김승수 · 한동훈
안철수 · 윤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 치료비 및 생계 지원 등 재정적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정보 제공 및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금전적 지원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동일한 범죄피해자임에도 발생 장소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장소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구조금 수령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구조금 범위에 차등을 두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조대상 범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의2.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영역(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포함한다) 안에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

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구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원(이하 “외국범죄피해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험금 또는 제3항에 따른 외국범죄피해보상금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는 그 범위에서 지급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미지급 또는 감액의 요건과 범위, 제4항에 따른 환수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다만,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구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벌어진 구조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조대상 범죄피해자의 구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신설>	제3조(정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구조대상 범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의2.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영역(대한민

	<u>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 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포함한다) 안에서 구조대 상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 상해를 입은 것</u>
	<u>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구 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대 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u>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생 략)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 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대 한민국 국민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상해 보험, 여행자보험 또는 이에 준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보험 계약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지 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u>

<u><신 설></u>	아니한다. ③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구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원(이하 “외국범죄피해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④ 제2항에 따른 보험금 또는 제3항에 따른 외국범죄피해보상금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는 그 범위에서 지급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u><신 설></u>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미지급 또는 감액의 요건과 범위, 제4항에 따른 환수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 ② (생략)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신 설>

1.·2. (생 략)

④ ~ ⑥ (생 략)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다만,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구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

다만,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벌어진 구조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② (생략) <u><신설></u>	<u>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조대상 범죄피해자의 구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